

EC의 안전(Safety)추진 동향

1. 개요

EC의 제품표준의 최고 요건은 표준에 맞게 디자인 되고 생산된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단일표준이나 혹은(유럽표준이 없을 때) 국별 표준에 의거한 단일화지침(Harmonization Directives)들은 이미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 조건(Requirements)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첫째, 제품안전 요구조건은 EC회원국들의 원초적 관심을 반영하는데 EC법규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안전에 위해 하다고 여겨지는 제품의 자국내 자유 유통을 금지할 재량권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원국의 재량권은 단일화 지침 자체내 「EMC Directive(전자기적 합성 지침)」의 Article b(1) (b) 예외조항 등」에서 종종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제품 안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다.

만약 한 회원국에서 화재 구조장비의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장비에 대한 엄격한 안전 규정이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민감성은 서로 다른 회원국간 제품 안전 관련 법규의 커다란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다.

다시말해서 A회원국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엄격한 규정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B회원국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셋째, 제품 안정성과 책임이다.

EC Council Directive(85/374/EEC)에서 생산자는 불량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자사 제품이 안전문제와 관련되었을 경우 EC나 국내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자사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생산자는 국별 혹은 EC의 의무규정에 따라 생산한 결과 제품의 결함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품안정 규정은 EC내 소비자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2. 제품안전 관련 규정

제품안전과 관련된 EC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일반 단일지침(General Harmonization Directives)규정이다. 이 규정은 New Approach하의 지침들을 포함한 모든 단일화 지침

들은 제품안전에 관한 필수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침들이 예외 조항을 두어 제품이 지침에 규정된 유럽 혹은 국별 표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위해 된다고 판단될 때 회원국들은 해당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품안전과 관련한 EC나 회원국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제품이 관련 지침의 필수안전 요구조건에 부합치 않을 경우 회원국들은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둘째는 특수제품 안전이나 작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안전 관련 지침이다.

EC는 특수제품의 안전과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지침들을 채택하고 있다. 제품 특별 안전규정으로는 인형 안전(Council Directive 88/378 ; 1988. 5. 3),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Council Directive 89/655/EEC), 작업장비 안전(Council Directive 89/391/EEC)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는 일반제품 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 GPSD)이다. 이것은 단일지침이나 특별규정이 포함하지 않는 EC시장내 여타 모든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지침(Council Directive 92/59/EEC ; 1992)이다.

① GSPD의 목적

EC시장내 제품의 고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회원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회원국은 이 지침으로 자국시장에 있는 제품이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원국간 규정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EC차원의 제품안전을 보장하게 되었다.

② GSPD의 범위

동지침이 여타 EC법규가 포함하지 않는 모든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전요구 조건들이 회원국 규정이

나 국가법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 예외조항으로 수리나 중고제품, 또는 일개 회원국 내에서 엄격히 통제되어 거래되는 경우는 개별국 차원의 내부 문제로 간주하여 적용치 않는다.

③ 적용 대상

GSPD의 대상범위는 매우 넓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제품 공급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동지침에 규제를 받게 된다.

④ 주요 내용

동지침으로 생산자 및 모든 제품 공급관련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제품의 잠재적 위험이나 안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시장에 출하된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고, GSPD와 부합치 않는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국은 이 사실을 집행위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유통금지 조치를 당한 생산자와 공급자는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품유통의 금지조치를 통보받는 집행위는 기타 회원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 조치의 적합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제품이 정말로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정되면 모든 회원국에 같은 금지조치를 취하게 된다.

3. 수입제품 안전규정(Council Regulation 339/93/EEC)

GSPD 규정은 제품이 EC시장에 출하될 때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 EC시장으로 들어오는 제3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EC산 제품과 같이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안전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1983년 2월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339/93/EEC)을 채택하여 수입품이 자유 유통되기 전에 검사토록 하고 있다.

① 범위

GSPD와 같이 수입품 안전규정도 일반규칙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세부 EC규정이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제품에 적용된다.

② 내용

이사회 규정(339/93/EEC)에 따라 각 회원국은 EC로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위해 여부가 발견될 시 잠정적으로 수입을 보류할 수 있다.

EC국경에서 세관은 보건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식(Labeling)혹은 관련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제품을 통제하고 이 사실을 제품 적합성을 감독·통제하기 위해 회원국이 지정한 관계기관(National Authorities)에 통보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제품의 자유유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Dangerous Product”(위험제품)혹은 “Product not in Conformity”(부적합제품)등의 라벨을 부착토록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3일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문제의 제품은 자유유통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은 위험제품의 EC시장 반입을 금지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 정보에 기초하여 유통 금지된 모든 제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모든 회원국이 즉시 이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③ 미결문제

비록 이사회 규정의 수입품을 EC제품과 동등한 차원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 미결문제가 남아 있다.

(1) 세관에 억류되어 있는 문제제품의 통관보류기관 미정

(2) 동 이사회 규정은 집행위나 EC나 국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제품의 통관을 회원국들에게 위임치 않고 있다.

사실 제3국산 수입품에 대한 집행위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거나 회원국 관련기관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더욱이 동이사회 규정은 EC법규의 세부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제품들이 개별국 법규에 자주 규제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3국 수입품에 대한 안전문제는 단연 개별국 차원의 영역으로 남게 되며 또한 시장통합이나 무역장벽 철폐 등은 안전분야에 있어서 아주 제한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끝으로 GSPD와는 달리 동 이사회 규정은 통관이 유보된 제품의 생산자나 공급관련자들에게 회원국을 상대로한 사법심사권을 위임치 않고 있다.

4. EC 법규(Community Legislation)에 관한 정보

제품안전과 관련한 EC법규는 여러가지 단일화 지침이나 특별 규정들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데, 이와 같은 정보에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집행위는 안전규정 관련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5. 결론

개별 회원국은 제3국 수입품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바 제3국 제품을 수입코져할 때에는 EC법규의 현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국 규정이나 조치들도 함께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